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9일, 김병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6. 9.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 9.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국방위원회(2026. 9. 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병주의원)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군사법경찰관리가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고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검사의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며, 구속장소 점검의

주체 및 위법한 구속에 대한 조치를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문성환)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제3항은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상호 협력관계로 전환되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폐지됨.

이에 개정안은 “그 지휘를 받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이러한 개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제22조제2항의 검사의 “지휘·복종” 규정을 “지도·조언 요청”으로 변경하고, 제3항의 구속장소 점검 주체를 “지방공소청장”으로, “감찰”을 “점검”으로 하며, 제4항의 송치명령을 해당 군 수사기관에 대한 석방 조치로 변경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 상호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종득)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 주체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추어 협력 관계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를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함.

6. 찬반토론의 요지

대안이 제16조제3항에서 “그 지휘를 받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문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 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관계에도 적용되는바 이를 일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